법안 C 전문
Westminster 시

조례 번호. XXXX

선출된 시장의 공직을 폐지하는 WESTMINSTER 시 지방자치법 제2.04장 ("시의회")를 개정하는, WESTMINSTER 시 시민에 대한 조례

이에 따라, Westminster 시 내 선거인들은 현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 과정을 통해 시장을 직접 선출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Westminster 시 내 선거인들은 현재 도시 내의 개별 선거구 네 곳에서 네 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제34902(b)절은 시의회에서 시장 선출직을 폐지하고 "시의회가 시장 선출 절차를 재확립"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유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의회는 선출된 시장 공직을 폐지하고 개별 선거구 5곳에서 5명의 시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조례의 채택 여부에 대한 질문을 유권자에게 제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에 대한 지침 14 CCR 15378에 정의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가 아니며 그 이유는 "환경에 직간접적인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조직적 또는 행정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조례가 CEQA에 따른 "프로젝트"였다 하더라도, 본 조례의 채택이 건설 또는 환경의 기타 다른 변화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본 조례의 채택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에서 면제되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14편, 제3장) CEQA 가이드라인의 15061(b)(3)절에 의거한다.

그러므로 이제, WESTMINSTER 시의 시민들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제1절. 급여.

Westminster 시 지방자치법 제2.04.080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4.080 급여.

캘리포니아 정부조직법 제36516절과 Westminster 시 지방자치법의 본 절에 의거, Westminster 시의 시의회는 각 시의원에 대해 매월 팔백오십 달러 오십 센트로 시의원 보수를 설정하며, 모든 의원의 새 임기 시작일부터 유효한다.

제2절. 조직.
Westminster 시 지방자치법 제2.04.090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4.090 조직.

(a) **시장.** 시의회가 시의회의 의원이 선출되는 총선거 이후 선거 결과 인증을 승인하는 회의에서, 그리고 비선거 연도 중 12월 첫 번째 회의 시, 또는 시장직에 공석이 있을 시, 시의회는 회의를 거쳐 의원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사람이 시장의 직함을 가지게 된다. 시장은 모든 시의회 의사진행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시장은 의전을 비롯해 모든 목적을 위해 시의 공식 수장이 되어야 한다. 시장은 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시의회가 부과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무에 맞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시의회의 뜻에 따라 이러한 직무를 수행한다.
(b) **부시장.** 시장이 선출된 동일한 회의에서, 시의회는 의원 중 한 명을 시의회의 뜻에 따라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부시장으로 지명한다. 부시장은 시장의 유고 또는 부재 시 시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절. 공직 임기.
Westminster 시 지방자치법 제2.04.100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4.100 시의원 공직 임기.

모든 선출직 시 공무원에 대한 총 지방선거는 매 짝수 연도의 11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에 주 전체 총선거와 통합되어야 한다. 시의 별도 선거구 다섯 곳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다섯 명이며, 이들은 각각 사 년 임기를 맡게 된다.

제4절. 선거구별 선거.
Westminster 시 지방자치법 제2.04.120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4.120 선거구별 선거.

A. 시의회. 선출된 시의원 다섯 명은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순서로 본 장에서 명시한, 시일 및 방식에 따라 선거구별로 선출되어야 한다.
B. 선거구 내 거주. 시의회의 각 의원은 의원이 지명되고, 선출될 당시와 해당 의원의 공직 임기 기간 동안 지명된 시의회 선거구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시의원이 (또는, 임명된 경우에는 전임자가) 더 이상 본인이 지명되었던 선거구의 거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그 공직은 즉시 공석이 되며 이 자리는 다른 공석에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충원된다. 시의원이 (또는, 임명된 경우에는 전임자가) 여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지 여기에 규정된 경계의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본인이 지명되었던 선거구의 거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은 그러한 변경을 이유로 해당 임기 동안 공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C. 의회 선거구. 시는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섯 개의 선거구로 나뉜다. 각 선거구의 의회 의석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에 의해서만 지명 및 선출되며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D. 선거구 경계. 시의회 선거구의 경계는 정부조직법 제34877.5절 및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0010절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E. 경계의 변경. 상기 시의회 선거구의 경계는 시의회 재적위원의 오분의 삼의 찬성으로 채택한 조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수립되어야 한다. 선거법 21601 참조. 경계는 십 년마다 실시하는 연방 인구조사에 따라 법률이 요구하는,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대로 시의회에 의해 조정된다. 시의회가 선거구의 경계를 변경하는 권한을 행사한 후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은 시의회가 채택한 조례에 의해 지정된 선거구 경계에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F. 현 공직자들. 이 조항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현직 시장 및 시의회 의원 네 명은 기존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공직을 계속 유지한다.
G. 의회 선거 순서. 제1, 제4, 제5 선거구 의회 의원은 2022년부터 공석이 되는 의회 의석으로 시작하여, 그 후 사 년마다 선출된다. 제2 및 제3 선거구 의회 의원은 2024년부터 공석이 되는 의회 의석으로 시작하여, 그 후 사 년마다 선출된다.

제5절. 임기 제한.
Westminster 시 지방자치법 제2.04.125절 ("임기 제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4.125 임기 제한.

A. 본 법안의 채택에 따라 2020년 11월 3일 선거에서 선출된 자를 시작으로, 그 누구도 시의회 의원으로서 사 년 임기를 삼회 이상 맡을 수 없다.

B. 전술한 항 및 임기 제한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임명되거나 시의원의 만료되지 않거나 원래 임기의 이분의 일 이상이 남은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선출된 자는 그 임기를 다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제6절. 향후 개정안.

본 조례의 그 어떤 내용도 시장이 직접 선출되지 않고, 다섯 개 선거구에서 다섯 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시의회가 이후에 본 조례로 개정된 절들을 직접 수정하는 조례를 채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본 조례의 그 어떤 내용도, 시의회가 본 조례의 목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후속 조례의 채택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

제7절. 해석. 본 조례의 그 어떤 내용도 현 시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직접 선출된 시장의 직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다.

제8절. 분리성.
본 규칙의 절, 부절, 조항, 문구 또는 내용 등 그 어떤 부분도 동등한 관할 법원의 결정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위헌으로 판명될 경우, 그러한 결정은 본 조례의 다른 모든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절. 유효 날짜.
본 조례는 2022년 6월 7일에 실시되는 특별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으로 즉시 발효된다.